

# 조선시대 時服에 관한 연구(1)

- 왕과 왕세자의 時服을 중심으로 -

권 준 희 · 이 순 원\*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대학원 ·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교수\*

## A Study on Sibok(時服) in Chosŏn Dynasty (1)

- Centering around Sibok(時服) of King and Prince -

Jun-hee Kweon · Soon-Won Lee\*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Professor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Sibok(時服) of king and prince in Chosŏn dynasty.

In the first half of Chosŏn, the official uniform was not established. Sibok(時服) was worn for expediency, so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Shillok(實錄) and Gukzooraeyi(國朝五禮儀), Sibok(時服) in Shillok(實錄) but Sangbok(常服), Chobok(朝服), Myounbok(冕服) in Gukzooraeyi(國朝五禮儀) as the costume of same ceremony. But we can recognize that king's Sibok(時服) in that process took the place of Gongbok(公服) of Korea dynasty, and was beyond simple working uniform though it was degraded than Gongbok(公服), Chobok(朝服), Myounbok(冕服).

In the latter half of Chosŏn, the number of appearance of Sibok(時服) in Shillok(實錄) was largely decreased, in addition to it, in interpretation of Sibok(時服) it was regarded as Sangbok(常服). Especially prince's Sibok(時服) in a coming-of-age ceremony was regarded as an ordinary dress.

Key Word : 時服(Sibok), 왕(King), 왕세자(Prince), 조선(Chosŏn)

### I. 서 언

조선 사회에서의 왕이란 당시 최고 권력자로서 그 위엄과 권위를 복식에서도 뚜렷하게 표현하였

다. 따라서 복식사의 연구에 있어서도 왕과 다음 후계자인 왕세자의 복식이 중요하게 다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그러한 왕과 왕세자의 복식 중 특히 時服에 대해 살펴본 것인데 지금까지 時服에

대한 연구는 백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백관이 入侍할 때나 公務를 볼 때의 服으로 公服, 常服과 같이 단령을 착용하되 흉배가식이 없고 색상으로 그것을 구분한다고 알려져 있다.<sup>1)</sup> 이에 먼저《朝鮮王朝實錄》의 기록을 중심으로 왕과 왕세자의 時服 착용 여부 및 그 착용상황에 대하여 살펴보고 《國朝五禮儀》와의 비교를 통해 시대 흐름에 따른 時服의 변천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비록 같은 조선시대라 할지라도 복식상의 차이를 보이는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조선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살펴 보고자 한다.

## II. 왕의 時服

왕의 時服에 대하여 《朝鮮王朝實錄》은 총29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표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태종, 세종대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이후 문종, 광해군, 경종대에는 각각 1건씩의 기록만이 보이고 있어 조선 전반기에 주로 착용되었음을 알 수 있고 각각

<표 1> 實錄에 보이는 왕, 왕세자의 時服 기록

시기	왕	왕세자
태종	8	1
세종	18	7
문종	1	·
세조	·	2
성종	·	1
중종	·	2
광해군	1	1
현종	·	2
숙종	·	2
경종	1	·
정조	·	1
순조	·	2

1) 유희경, 김문자 『한국복식문화사』교문사, 1998, pp.216-217.

2) 勅書を 맞이하는 의식을 말하는 것인데 勅은 詔와 더불어 중국 天子가 내리는 명령을 뜻한다. 漢代의 詔는 중앙관아에 대한 명령, 勅은 그 이외의 諸命과 지방관아에 내리는 명령을 뜻하였고 元, 明代에 이르러 포괄적으로 天子의 일반적인 명령을 뜻하게 되었지만 詔와 勅은 격을 달리 하여 朝鮮에서도 詔書와 勅書에 차등을 두어 이를 받드는 의례를 달리하였다. (韓祐昉의 5인, 『譯註 經國大典』註釋篇,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時服 착용시의 儀禮를 정리해 보면 <표 2>와 같다.

<표 2> 實錄에 보이는 時服 着用時의 儀禮

儀禮	왕	왕세자
迎勅書儀	11	3
使臣맞이	4	·
望闕禮	3	·
拜表(箋)儀	2	1
謁廟·望廟禮	2	·
敎書頒降儀	1	·
文武科放榜儀	1	·
謁聖(先師)儀	1	1
望闕禮後 宴會	1	·
大閱儀	1	·
文昭殿 秋夕祭	1	·
冠禮	·	6
服制가 끝난 후	·	2
왕이 룡에 행행후 환궁시	·	2
世子代行宗廟祭後 飲福節次	·	2
世子受朝參儀	·	1
大殿獻壽儀	·	1
幸學儀	·	1

### 1. 전반기

#### 1) 迎勅書儀<sup>2)</sup>

· 세종실록 권5, 1년 8월 17일(己丑)

使臣太監黃儼至 上王及王以時服出迎于慕華樓  
先導至景福宮宮城門外 結綵棚設雜戲來道結綵  
使臣至宣勅書

· 세종실록 권39, 10년 3월 19일(辛丑)

受本朝使臣賞來勅書儀...殿下時服率王世子及  
群官.

· 세종실록 권50, 12년 11월 11일(戊申)

上以時服率王世子及百官迎勅于慕華館.

- 세종실록 권67, 17년 3월 18일(庚寅)  
上就幄次釋冕服群臣釋朝服以時服受勅.
  - 세종실록 권70, 17년 12월 21일(戊午)  
上以時服率群臣幸慕華館迎勅如儀.
  - 태종실록 권11, 6년 4월 19일(己卯)  
朝廷內使.....等至結山棚攤禮.....儼曰勅書也.....禮  
官曰然即當以時服迎之.
  - 세종실록 권30, 7년 11월 2일(丁酉)  
禮曹啓迎賜藥材勅書儀注.....殿下時服率王世子  
及群官備儀仗出慕華樓.
  - 세종실록 권48, 12년 4월 17일(丙戌)  
禮曹啓 受本國使臣 來勅書朝服儀.....殿下時服  
率王世子及群官 備儀仗 出慕華樓.
  - 세종실록 권67, 17년 3월 13일(乙酉)  
一藩國禮儀 迎朝則朝服 受賜時則時服.
  - 세종실록 권94, 23년 12월 5일(丁酉)  
禮曹撰奉迎賜藥儀注以啓曰.....殿下時服率王世  
子及群官備儀仗出慕華館.
  - 세종실록 권127, 32년 1월 5일(辛巳)  
召慶昌府尹鄭陽曰.....迎勅本以時服.
- 이상에서 앞의 5건은 왕이 迎勅書儀에서 실제 착

용했다는 기록이고 뒤의 6건은 迎勅書儀 論議時 왕의 時服착용을 언급한 기록이다. 총29건의 기록 중에서 迎勅書儀時 時服착용 기록이 11건을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태종6년 4월에 명나라 사신과 勅書를 맞이하는 의식에 대한 절차를 논의하며 時服을 언급한 것을 제외하면 모두 세종대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勅書를 맞이할 때 왕의 복식은 태종실록에 의하면 時服이외에 冕服<sup>3)</sup>, 淡彩服<sup>4)</sup>, 靑淡服<sup>5)</sup>을 착용했다는 기록이 있고 세종실록에서도 吉服<sup>6)</sup>, 黑衣와 烏帶<sup>7)</sup>를 한다는 등의 기록도 존재하고 있으며 세종20년 1월<sup>8)</sup>에는 중국에 보내는 자문에서 배신에게 조회받을 때, 칙서를 맞이할 때, 또 상시 정사시의 관복은 아직 받지 못하였으니 이에 대해 사여를 청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세종대까지 칙서를 맞이할 때의 복식이 확립되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迎勅書時의 복식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종대에 時服을 주로 착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실록에 의하면 迎詔書儀時에는 公服<sup>9)</sup>, 朝服<sup>10)</sup>, 冕服<sup>11)</sup>이 언급되었고 《國朝五禮儀》<sup>12)</sup>에서도 詔書를 맞이할 때에는 면복을 착용하는 것으로

3) 태종실록 권, 1년 9월 1일(丁亥)

태종실록 권, 2년 2월 26일(己卯)

태종실록 권, 3년 1월 13일(辛卯)

4) 태종실록 권17, 9년 5월 3일(甲戌)

5) 태종실록 권18, 9년 10월 21일(己未)

6) 세종실록 권21, 5년 7월, 30일(戊申)

세종실록 권21, 5년 8월 18일(丙寅)

7) 세종실록 권23, 6년 1월 17일(甲午)

8) 세종실록 권80, 20년 1월 21일(丙午)

檢察官賚去事目.....受陪臣朝見及其餘迎接勅書常時視事合用冠服未蒙頒降 恐違朝廷之制 伏望聖慈所有各件冠服頒降服用便益

9) 태종실록 권11, 6년 4월 19일(己卯)

10) 세종실록 권67, 17년 3월 13일(乙酉)

세종실록 권127, 32년 1월 5일(辛巳)

11) 세종실록 권67, 17년 3월 18일(庚寅)

성종실록 권147, 13년 10월 12일(丁丑)

12) 『國朝五禮儀』卷3, 嘉禮 迎詔書儀.

冠服將定 大司諫啓請中嚴 殿下具冕服 王世子具冕服 宗親文武百官各具朝服

기록하고 있는데 勅書보다는 詔書의 격이 더 높았음을 감안할 때<sup>13)</sup> 時服은 公服, 朝服, 冕服보다는 확실히 격이 낮은 복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세종실록 五禮儀<sup>14)</sup>에 의하면 칙서를 맞이할 때 전하는 翼善冠, 袞龍袍처럼으로 輿를 타고 나온다고 기록하고 있고 성종실록 13년 10월 12일의 기록<sup>15)</sup>에서도 익선관을 착용한다고 하였으며 《國朝五禮儀》<sup>16)</sup>에서도 세종실록 五禮儀와 동일하게 翼善冠, 袞龍袍로 기록하고 있어 조선 전반기에 아직 왕의 복식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迎勅書儀時왕은 세종대까지는 주로 時服을 착용하고 성종대 이후 翼善冠, 袞龍袍의 常服으로 정착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사신맞이

- 태종실록 권11, 6년 4월 19일(己卯)  
朝廷內使.....等至結山棚備禮. 上以時服率百官出盤松亭.
- 태종실록 권11, 6년 12월 22일(丁未)  
朝廷內使.....等來. 上以時服率百官出迎于盤松亭結山棚.
- 태종실록 권22, 11년 8월 15일(甲辰)  
朝廷使臣宦官太監黃徽來. 上以時服率百官出迎于慕華樓.

중국 사신이 조선에 來往할 때에는 대부분 詔書나 칙서 혹은 誥命 등을 함께 가지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迎詔書儀에 따라 면복을 착용하거나 迎

勅書儀에 따라 常服을 착용하기 때문에 왕이 사신만을 단독으로 맞이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 왕이 時服을 착용하고 사신을 맞이한 기록은 태종대에 3건만이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고려시대 왕이 중국 사신을 접견할 때는 公服을 착용하였으나 조선시대에는 왕의 公服이 더 이상 착용되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태종대 왕이 사신을 맞이하여 時服을 착용하였다는 기록은 조선초기 아직 官服의 정체가 확립되기 이전에 時服이 고려시대의 公服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3) 拜表(箋)儀<sup>17)</sup>, 望闕行禮儀<sup>18)</sup>

- 세종실록 권31, 8년 3월 18일(壬子)  
上以時服率王世子及文武群臣拜謝恩表.
- 세종실록 권49, 12년 9월 4일(壬寅)  
上以時服率百官拜賀千秋箋.
- 태종실록 권26, 13년 11월 16일(壬辰)  
上不豫凡上三日 命以代言司曰予手尙未平復難於執圭於冬至向闕拜如何 左副代言趙未生曰 宜以時服行之.
- 태종실록 권27, 14년 1월 1일(丙子)  
上以時服率百官賀正停本期賀禮.....上謂代言等曰 冕旒重着則頭痛 凡賀禮百官朝服 予獨以時服行禮可乎 知申事金汝知對曰 無所不可 代言韓尙德對曰 向闕賀拜禮之大者時服不可.
- 문종실록 권2, 즉위년 7월 23일(乙丑)

13) 주1) 참조.

14) 세종실록 권132, 五禮·嘉禮, 迎勅書儀  
殿下具翼善冠袞龍袍乘輿以出

15) 성종실록 권147, 13년 10월 12일(丁丑)  
傳曰 迎朝則用冕服 迎勅則用翼善冠

16) 國朝五禮儀, 권3, 嘉禮, 迎勅書儀  
殿下具翼善冠袞龍袍乘輿以出

17) 表文이나 箋文을 배송하는 의식인데 보통 국왕이 중국 황제에게 올리는 글을 表, 皇太后·皇后·皇太子에게 올리는 글을 箋이라 하였다. (韓汝躬의 5人, 앞책, p.48)

18) 正月, 冬至 및 聖節에 황제의 궁궐을 바라보고 行禮하는 의식을 말한다.(권오돈·이재호 번역, 『세종장헌대왕실록』 권21. 오례의Ⅱ, 세종대왕기념사업회, p.7)

召議政府議 聖節賀禮及迎命節次河濱金宗瑞鄭  
 朶等議 聖節賀禮有舞蹈 殿下方在喪中 不宜舞  
 蹈 且未受命不可御冕服 宜令百官代行 上出迎  
 詔命 皇甫仁議...三日則當御時服親行賀禮...南  
 智鄭甲孫議以時服行賀禮後迎命爲便 上從演等  
 議.

이상에서 앞의 2건은 拜表(箋)儀에 관한 기록이  
 고 뒤의 3건은 望闕行禮儀에 관한 기록인데 문종대  
 聖節賀禮와 迎命節次時의 時服에 관한 기록은 聖節  
 賀禮가 望闕禮를 통해 이루어지므로<sup>19)</sup> 문종대의 기  
 록도 望闕禮에 관한 기록으로 포함시켰다.

拜表(箋)儀와 望闕禮時 《國朝五禮儀》<sup>20)</sup>에서는  
 면복으로 기록하고 있는 바 초기 아직 왕의 관복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로 時服을 착용하고  
 行禮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다만 望闕禮時의 기  
 록에서 태종 13년에는 왕이 손이 아파 笏을 잡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태종 14년에는 면류관을 곁들여  
 착용하면 머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그리고 문종대  
 에는 아직 고명을 받지 않아 면복을 착용할 수 없  
 다는 이유로 時服을 대신 착용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時服이 公服, 朝服, 冕服보다는 격이 낮은  
 복식이었음은 확실하다. 그러나 문종대에는 아직  
 고명을 받지 않았다는 정당한 이유가 있지만 태종  
 대에는 望闕禮에는 冕服을 착용해야한다고 알고 있  
 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큰 행사에 면복 대신  
 時服을 착용하였음은 적어도 조선 전반기 왕의 時  
 服이 단순한 일상 근무복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측  
 된다.

4) 敎書頒降儀, 文武科 放榜儀

· 세종실록 권32, 8년 5월 6일(己亥)

上寤旱...以時服御幄次頒敎書.

· 세종실록 권63, 16년 3월 7일(甲申)

國制文武科放榜 上以時服陞座侍臣立而已 至  
 是依中朝禮 禮曹撰進文武科放榜儀注.

敎書頒降儀와 文武科 放榜儀時 《國朝五禮儀》

<sup>21)</sup>에 의하면 遠遊冠, 絳紗袍의 朝服을 착용하는 것  
 으로 기록되어 있어 朝服으로 정착되기 이전에 時  
 服을 착용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기타

① 謁先聖儀

· 태종실록 권28, 14년 7월 17일(戊子)

初詳定謁聖儀註...上謂代言曰...以謁先聖

當以冕服行禮 然冕服未至 權以時服行事如  
 何 其問諸崙 崙對以誠如上教 遂以時服行  
 之.

② 文昭殿 秋夕祭

· 태종실록 권30, 15년 8월 10일(甲戌)

上率百官詣文昭殿行秋夕祭以時服行禮.

③ 謁廟, 望廟禮 (종묘에 참배)

· 세종실록 권15, 4년 1월 8일(丙寅)

上從內道詣宗廟以時服謁廟

· 세종실록 권27, 7년 1월 13일(甲申)

上詣宗廟以時服率百官行望廟禮入御齋殿

④ 望闕禮後 宴會

· 세종실록 권27, 7년 1월 1일(壬申)

19) 주7)참조

20) 『國朝五禮儀』卷3, 嘉禮, 拜表儀

左通禮詣閣外俯伏跪啓請中殿 殿下具冕服 御思政殿繳扇侍衛如常儀

『國朝五禮儀』卷3, 嘉禮, 正至及聖節望闕行禮儀

左通禮詣閣外俯伏跪啓請中殿 殿下具冕服 御思政殿繳扇侍衛如常儀

21) 『國朝五禮儀』卷4, 嘉禮, 敎書頒降儀

左通禮詣閣外俯伏跪啓請中殿 殿下具遠遊冠絳紗袍 御思政殿繳扇侍衛如常儀

『國朝五禮儀』卷4, 嘉禮, 文武科放榜儀

左通禮詣閣外俯伏跪啓請中殿 殿下具遠遊冠絳紗袍 御思政殿繳扇侍衛如常儀

上以時服御仁政殿宴群臣

⑤ 大閱儀<sup>22)</sup>

· 세종실록 권54, 13년 10월 15일(丙午)  
 上謂許稠曰 大閱儀註錄於大典乎 稠曰錄之  
 上曰大閱之禮 王親服戎衣 侍衛之臣皆着甲  
 胄.....或云王以時服而坐 侍衛之臣亦以時服侍  
 立 此議何如.

왕의 時服은 위와 같은 경우에서도 착용되었는데 태종 14년 謁先聖儀時에는 冕服으로 行禮해야함을 알고는 있었지만 冕服이 아직 (중국에서)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시로 時服을 착용한 것으로 보아 다시 한번 時服이 비록 冕服보다는 격이 낮았으나 冕服 대신 입을 수 있을 만큼의 위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세종대 종묘에 참배시(謁廟, 望廟禮) 時服을 착용하고 있는데 모두 다음날 春享大祭를 치르기 전날 행해진 것으로 大祭時에는 물론 冕服을 착용하였지만 이전의 행사에는 時服으로 行禮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세종대 望闕禮후 연회時 時服을 착용하고 있는데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望闕禮는 본래 冕服을 착용하는 것으로 冕服으로 行禮 후 時服으로 갈아 입고 나머지 절차를 치룬 것이다. 즉 어떤 큰 의례를 행하기 앞서 혹은 행한 후 착용된 것으로 정식 禮服으로 착용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전반기 왕의 時服은 이외에도 태종대에는 문소전에서 추석제를 올리며 착용되기도 하였고 세종대에는 망궐례 후에 연회를 베풀며 착용되었으며 또 大閱儀를 논하며 언급되기도 하였지만 이후의 기록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2. 후반기

왕의 時服에 관한 實錄의 기록은 조선 후반기에 오면 광해군대 1건, 경종대 1건으로 그 출현횟수가 현격히 줄어들고 있다. 이를 나누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사신맞이

· 경종실록 권2, 즉위년 11월 22일(壬辰)

上幸館所以玄冠服行問候禮 改着時服與清使接見.

경종 즉위년에 왕이 時服을 입고 청나라 사신을 접견하였다는 기록인데 다음해 즉 경종 1년 2월 11일(壬寅)의 기록에 의하면 視事服 즉 常服으로 사신을 접견한 예가 1건 보인다. 이를 살펴보면 조선 초기 時服이 고려의 公服을 대신하였다고는 하나 후기까지 지속된 定制는 아니었고 칙서란 이를 가지고 오는 사신이 항상 함께 오기 마련이므로 迎勅書儀時 時服이 常服으로 대치되었던 점을 감안해 보면 오히려 사신접견시의 복식도 후반기에는 常服으로 대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2) 사간원과 임금간의 時服논의

· 광해군일기 권65, 5년 4월 9일(丁酉)

司諫院啓曰 五禮儀曰 上親祭時 太廟則以冕服行禮 文昭殿懿廟則以翼善冠袞袍行禮 明有定規 今此奉慈殿以冕服行祭 有違禮文 請依大臣之議 一遵五禮儀施行 答曰 攝祭時 可用祭服 親祭時 用時服 別無義理 況前既以冕服行事 何可異同 毋庸煩論.

이것은 奉慈殿에 禮를 행하며 사간원과 임금간의 논의에서 時服을 언급한 것으로 이에 의하면 時服의 개념을 전반기와는 다르게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奉慈殿에 冕服으로 行禮한 것에 대해 사간원에서 五禮儀의 기록을 들어 冕服이 아닌 익

22) 왕의 參觀下에 행하는 習陣으로 매년 9월, 10월중에 都外에서 실시하였다. 조선시대의 대외의례는 세종 3년에 처음 정해졌고 문종 원년 陣法으로 확정되었다. 陣法에 의하면 좌, 우군이 數鍊場에서 마주 布陣한 후 大駕가 도착하면 大將의 誓辭가 있고 곧 습진에 들어간다. (한우근외 5인, 앞책, p.624)

선관, 곤룡포를 착용하여야 마땅하였음을 아뢰니 임금의 답하기를 攝祭 즉 다른 사람이 제사를 대할 경우에는 祭服을 착용하고 임금 자신이 親祭시에는 時服을 착용하여야 한다는 것은 義理가 없으며 이미 冕服으로 行禮하였으니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 즉 사간원이 말한 익선관, 곤룡포에 대해 임금은 時服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조선 전반기에는 왕의 時服이라는 것이 常服과는 다른 하나의 복식명칭으로 사용되었으나 후반기에 오면 익선관, 곤룡포를 왕의 時服으로 하여 常服과 時服을 동일하게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III. 왕세자의 時服

왕세자의 時服에 대하여 《朝鮮王朝實錄》은 총21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왕의 기록이 태종, 세종대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것과 달리 왕세자의 時服에 관한 기록은 앞의 <표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순조대까지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이를 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각각의 착용상황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1. 전반기

##### 1) 迎勅書儀

- 세종실록 권92, 23년 4월 19일(乙酉)  
謝恩使金乙亥賚勅還自京師 王世子率隨翊群臣以時服迎于五里
- 세종실록 권98, 24년 10월 4일(辛卯)  
禮曹啓本國使臣賚來勅書迎接王世子代行儀注.....期日王世子及文武群官時服出于慕華館.

- 세종실록 권125, 31년 9월 7일(甲申)  
王世子代行迎勅儀.....王世子時服備儀仗 文武群官時服出迎於慕華館.

迎勅書儀時 왕세자의 복식도 세종대에만 3건이 보이고 있는데 왕의 迎勅書儀時 복식에서 時服을 착용하다가 성종대이후 翼善冠, 袞龍袍의 常服으로 정착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듯이 왕세자도 아직 관복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時服을 착용한 것으로 보인다.

##### 2) 拜箋儀

- 태종실록 권35, 18년 5월 15일(甲子)  
王世子遣左文學禹承範 奉箋賀誕日 以時服率僚屬 出書筵廳前庭拜箋.

拜箋儀에서 왕세자의 복식은 세종실록 오례의<sup>23)</sup>에서는 조복으로 《國朝五禮儀》<sup>24)</sup>에서는 면복으로 기록하고 있어 시대의 흐름에 따라 拜箋儀에서 태종대에는 時服을, 이후 세종대에는 조복을, 그리고 성종대이후에는 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면복으로 비로소 확립된 것으로 보인다.

##### 3) 世子受朝參儀

- 세종실록 권100, 25년 6월 3일(丙戌)  
禮曹撰進世子受朝參儀註.....前五刻.....宗室及文武群官俱以時服集直房.....王世子詣後堂以時服升座西向.

《國朝五禮儀》<sup>25)</sup>에서는 常服으로 기록하고 있어 실록과 다른데 이것 역시 迎勅書儀나 拜箋儀에서 時服을 착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직 관복의 제도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착용된 것으로 보인다.

23) 세종실록 권132, 五禮·嘉禮, 拜表儀(拜箋附)

王世子具朝服出

24) 주19)참조

25) 『國朝續五禮儀』권3, 嘉禮 王世子受朝參儀

拜箋儀(拜箋)內殿少頃又白外備王世子具翼善冠袞龍袍乘輿以出

4) 기타

① 拜謁先師儀

· 세종실록 권63, 16년 3월 5일(壬午)  
 禮曹撰進拜謁先師儀註.....王世子時服入就位

② 世子代行宗廟祭後 飲福節次(종묘제를 대행한 후 음복하는 절차)

· 세종실록 권98, 24년11월 27일(癸未)  
 禮曹啓王世子代行宗廟祭後飲福節次曰 王世子釋祭服以時服出坐幕次向西.  
 · 세종실록 권, 25년 12월 26일(丙午)  
 禮曹損益 王世子代行宗廟祭後飲福儀注啓曰 王世子釋祭服以時服出坐幕次.

③ 大殿獻壽儀式

· 세조실록 권10, 3년 3월 7일  
 大殿上壽儀.....鼓二殿 王世子與侍宴官以下時服門外位.

④ 幸學儀

· 세조실록 권38, 12년 2월 12일(甲申)  
 召領議政.....議定幸學儀 其儀曰 王世子以下百官以時服侍立光化門外.

⑤ 왕이 릉에 행행후 환궁시

· 중종실록 권80, 30년 9월 9일(丁卯)  
 禮曹啓曰 齊陵行幸還宮時 世子以時服當迎駕而進宴時自上御戎服故百官皆戎服世子亦當戎服矣 前例還宮時世子以時服祇送 由敦義門而入矣 然若以戎服隨駕則於禮當矣 此事共議于朝而啓之耳 傳曰世子留都 故以時服率百官祇迎矣 以時服進宴祇送 而入敦義門可也 其間不可屢爲改服 依舊例當矣.  
 · 중종실록 권80, 30년 9월 21일(己卯)  
 大駕發碧蹄驛到彌勒院川邊小晝停饋宗宰午初到弘濟院 世子具時服率百官郊迎午正

⑥ 正朝使가 아뢴 聞見事件 중의 時服 언급

· 성종실록 권77, 8년 2월 6일(甲辰)

正朝使尹壕副使洪利老回自京師復命 聞見事件曰.....一親王世子冠服.....汴梁殿下使臣云 世子朔望則穿時服 聖節正至生辰凡賀禮時則穿圭服.

왕세자는 위와 같은 의례에서도 時服을 착용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대부분 1, 2회 한정적으로 착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⑥번 성종 8년의 기록은 正朝使가 북경에서 돌아와 북명하고 문견사건을 아뢴 것으로 친왕세자의 관복에 대해 예부에 물었는데 모두 말하지 않았고 다만 변량전하의 사신은 말하기를 '세자는 삭망이면 시복을 입고 성절과 정지, 생신, 모든 하례 때에는 규복을 입는다'고 하였다. 중국의 경우 송대의 時服은 매년 단오절, 10월, 혹은 봉건황제의 五聖節 등의 계절에 따라 各官에게 사여한 복식이었고<sup>26)</sup> 이후 명대에는 비슷한 의미의 賜服<sup>27)</sup>이라는 것은 있지만 時服이라는 명칭은 보이지 않고 있다. 어쨌든 중국의 時服은 특정 의례에서 입는 것은 아니었고 이 기록에서도 정식으로 예부에서 말한 것이 아니고 사적인 자리에서 말한 것으로 더 이상의 언급이 없어 성종대 이에 따라 상세한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 후반기

1) 冠禮

· 광해군일기 권26, 2년 3월 1일(丁丑)  
 禮曹啓曰.....則五禮儀王世子冠禮時 着時服以出 則常時未冠前所着據此可知未冠前巾服以此爲定  
 · 현종실록 권18, 11년 2월 9일(丁卯)  
 禮曹啓曰 禮文中云 王世子冠禮日 弼善跪白外備 王世子以時服出 卽今所着時服 乃是龍袍 而龍袍翼善冠初加之服也 既以時服出座 則更無初加之服 似當以元子時童髻玉簪鴉青團領黑靴出座 以爲循序三加之地 講議大臣以定.  
 · 현종실록 권18, 11년 2월 12일(庚午)

26) 周錫保, 「中國古代服飾史」中國戲劇出版社, 1984. p.259.

27) 周錫保, 앞책, p.380.



朴長遠以王世子冠禮初出時服色仰稟 上曰所爲時服 卽常時所着之服 黑圓領似非其服 曾在辛卯年 予以鴉青直領條帶 爲初出之服.

· 정조실록 권53, 24년 2월 2일(乙酉)

王世子行冠禮冊禮于集福外軒.....冠禮時至 王世子時服以出講學時服.

· 순조실록 권, 19년 2월 27일(己丑)

禮曹啓言 王世子冠禮時初出房服色 列朝已例 皆以鴉青直領條帶 而庚戌年初以草綠道袍磨鍊後 更以鴉青直領舉行 庚申年則先朝下教 以鴉青直領不載於五禮儀 命用講學時服色 今番則係是冊禮後書筵時服 乃是袞袍 而卽初加之服也 不可用於初出房時 謹稽儀禮 士冠禮曰 將冠者采衣 司馬氏吾儀 初加前服 只稱以袍 五禮儀只稱時服 俱無明的可據 今以列朝已例遵行 則當用鴉青直領 而先朝下教 以非五禮儀所載 命勿用.

· 순조실록 권, 19년 3월 15일(丁未)

領議政徐龍輔左議政金思穆右議政南公轍獻議言 朱子家禮冠禮篇 將冠者初出房時服四揆衫 四揆衫卽中國人未冠前常時所著之便服也 我朝之直領道袍均是便服 而古時則士大夫平居多用直領 近世則多用道袍 服用之異雖緣俗習之不同 其實一也 大小朝講筵服色 法講則例以袞袍 召對則例以道袍 今此王世子冠禮初出房時 若用道袍 則與列聖朝已例庚申特教及中朝士冠禮五禮儀所載時服之文 俱似無違 從之.

총 6건으로 왕세자의 時服착용 상황 중 冠禮時의 時服이 가장 빈번하게 논의되었는데 모두 <國朝五禮儀>의 기록을 해석하면서 논의되었다는 점과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 해석을 달리 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즉 광해군대의 기록에 의하면 五禮儀에 왕세자가 冠禮時 時服을 입고 나온다고 하였으니 時服이란 즉 常時 冠禮를 치르기 전에 착용한 것임을 이로 근거하여 알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현종 11년 2월 9일(丁卯)의 기록에는 冠

禮時 時服으로 나오던 지금 입고 있는 時服은 바로 龍袍로 初加時 입을 服이 없게 되므로 결국 처음에는 아청색직령을 입고 나오도록 하였으며 또 同年 同月 12일(庚午)에는 역시 冠禮時 세자의 복식을 논하며 時服이란 常時에 입는 옷으로 흑단령과 유사하지만 바로 흑단령은 아니라고 언급하고 있다. 다시 정리하면 時服은 常時에 입는 옷이고 龍袍로 흑단령과 유사하지만 다른 복식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때 세자의 龍袍란 바로 세자의 袞龍袍 즉 常服을 말하는데 세자의 常服色은 영조대의 <國朝續五禮儀補>에는 黑緞(여름에는 黑紗)으로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물론 현종대는 영조대보다 시기적으로 앞서지만 선조대 이후 세자의 흑색용포 착용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당시의 龍袍는 흑색이었고 따라서 時服이 龍袍라면 時服도 흑색이었을 것이며 이것이 흑단령과 유사하지만 바로 흑단령은 아니라는 것은 흑색 용포와 단순한 흑색 단령을 다르게 인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조24년 2월의 기록에 의하면 세자 冠禮와 冊封禮를 거행하면서 관례시간이 되자 세자가 時服 차림으로 나왔으며 初加時에 곤룡포를 입었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때의 時服이란 세자의 講學時 服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자 강학시에는 용포를 착용하였으므로 처음 입고 나오는 옷이나 初加時의 옷이나 서로 동일한 복식을 五禮儀에 의거하여 명칭만을 時服, 곤룡포로 다르게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순조대의 기록을 보면 먼저 19년 2월 27일(己丑)에는 관례시 처음 입고 나올 복식에 대하여 再次 논의를 거듭하고 마침내 同年 3월 15일(丁未)에는 <朱子家禮>冠禮篇에 처음에 사구삼을 입었다고 하였는데 사구삼이란 중국 사람이 관례하기 전에 평소 입는 편복이고, 조선 왕조에서는 직령과 도포가 모두 편복인데 옛날에는 대부분 직령을 입었지만 근세에는 대부분 도포를 입으며, 강학시의 복식에서도 法講에는 袞袍를 입지만 召對에는 도포를 입

으므로 도포를 착용한다면 열성조의 예와 정조대 경신년의 하교 및 중국의 사관례, 그리고 五禮儀에 기재된 時服의 글과 모두 어긋남이 없을 것이라 하여 道袍로 결정하고 있다. 즉 便服인 道袍로 결정하면서 時服의 글과 어긋남이 없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時服이라는 의미를 便服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광해군이후 현종, 정조대의 時服논의 과정을 살펴볼 때 조선 후반기에 왕세자의 時服이란 뚜렷한 의미를 지니지 못하고 용어 자체의 해석에서부터 혼돈이 있었던 것 같고 이에 순조대 관례시 初出服으로서의 時服은 《朱子家禮》의 初出服이 常時에 입는 便服이었다는 데에 준하여 당시의 便服으로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sup>28)</sup>.

이상 6건의 기록을 살펴보면 《國朝五禮儀》에 기록된 왕세자 冠禮時 初出服으로서의 時服에 대한 논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 해석을 조금씩 달리하여 광해군대에는 세자의 冠禮前 常時 착용복식으로, 현종대와 정조대에는 龍袍와 동일복식으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순조대에는 일종의 便服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服制가 끝난 후의 時服착용문제

· 숙종실록 권61, 44년 2월 10일(己丑)

禮曹進服制單子.....王世子.....三十日除十三日公除....服盡後始用時服

· 숙종실록 권61, 44년 2월 11일(庚寅)

領議政金昌集議以爲.....王世子.....服盡後始用時服

예조에서 세자의 服制가 끝난 뒤 時服을 착용한다고 아뢴 것인데 服制가 끝난다함은 이제 喪服이 아닌 吉服을 착용한다는 것으로 時服이 吉服 中 하

나였음을 의미한다. 다만 여기에서 服制가 끝난 후 세자의 일상 視事服 즉 의선관과 곤룡포로 갈아입는 것을 지칭하여 즉 常服과 時服을 동일하게 인식하고 時服이라고 하였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바로 3년 뒤인 경종 1년 8월 22일(庚辰)의 기록<sup>29)</sup>에 王世弟 입궁시<sup>30)</sup> 비록 冊禮 이전이지만 名號가 정해졌으므로 儀節을 마련하여 관은 의선관, 옷은 時服을 착용하도록 하였다고 했는데 이로부터 경종 1년에는 常服과 時服을 동일시한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로부터 3년 전인 숙종44년 세자가 服制를 끝낸 후 착용한 時服도 세자의 일상 視事服 즉 常服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 IV.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 먼저 왕의 時服은 조선전반기에는 관복의 정제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 착용된 성격이 강하여 동일한 儀禮에서 태조 이래 세종대까지의 실록에서는 時服을 착용하였다고 기록한 반면 《國朝五禮儀》의 기록에서는 常服, 朝服, 冕服 등으로 기록된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실록에 나타난 時服기록의 시기를 살펴보다라도 왕의 경우 총 29건 중 태종, 세종대에 26건, 문종대 1건으로 전반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國朝五禮儀》의 편찬으로 조선시대 전반적인 관복이 정립되었다고 보는 성종대 이후의 時服언급은 광해군대 1건, 경종대 1건으로 그 경향을 달리하고 있다. 다만 그러한 과정에서 왕의 時服은 초기에 고려의 公服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그 지위는 비록 公服, 朝服, 冕服보다는 격이 낮았지만 먼

28) 강순제, “冠禮服小考”, 성심여자대학 생관과학연구소집 제4권 제1호, 1984, p.42.

29) 경종실록 권4, 1년 8월 22일(庚辰)

禮曹請以王世弟入宮時冠服及巽術之節議于大臣 領議政金昌集等言 儲嗣自私第入宮雖在冊禮之前名號既定儀節不可不備.....冠用巽善冠服用時服爲宜

30) 경종 즉위 이듬해인 1721년 그의 多病無子를 이유로 建儲의 논의가 일어나 노론인 영의정 김창집, 좌의정 이건명 등은 이복동생 延祜君(뒤의 영조)을 世弟로 책봉하게 하였는데 그의 입궁을 말한다. (한국 정선 문화 연구원,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 사전2』 1988, p.85.)

복을 대신하여 입고 의례를 행한 경우도 있어 단순한 일상 근무복 이상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후반기에는 실록에 2건만이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광해군대 사간원과 왕과의 時服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익선관, 곤룡포를 왕이 時服이라고 지칭하고 있고 경종대에도 즉위년 11월에는 時服으로 청나라 사신을 접견하지만 3개월후 즉 1년 2월에는 視事服 즉 常服으로 사신을 접견하고 있어 時服이 익선관, 곤룡포의 常服으로 대치 혹은 이와 동일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 왕세자의 時服은 실록에 총 21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전반기에 13건, 후반기에 8건으로 왕의 경우와 같은 현격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며, 또한 전반기 기록을 보더라도 태종, 세종대 이후에도 세조대 2건, 성종대 1건, 중종대 2건으로 왕의 경우와 같이 태종, 세종대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데 성종대 1건은 명에 갔다 온 사신이 명에서 듣고 보고 온 사실을 아뢴 기록으로 친왕세자의 관복에 대해 예부에 물었으나 정식으로 답변을 얻지 못했다는 기록이다. 여기에서 비록 《國朝五禮儀》의 편찬으로 관복의 정립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성종대에도 왕세자의 관복은 아직 확립되지 못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왕세자 관복에 대한 혼란, 특히 왕세자 時服에 대한 혼란은 후반기의 기록 8건 중 6건이 《國朝五禮儀》의 왕세자 冠禮時 初出服으로서의 時服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였다는 점에서도 더욱 확실히 드러난다. 다만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동일한 禮儀임에도 불구하고 태조 이래 세종대까지의 실록에서는 時服을 착용하였다고 기록한 반면 《國朝五禮儀》의 기록에서는 常服, 朝服, 冕服 등으로 기록하여 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時服의 임시 착용 성격이 두드러지고, 또한 성종대 이후에도 기록은 보이지만 대부분 1, 2회 한정적으로 착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후반기에는 앞서 제시하였듯이 8건 중 6건이 《國朝五禮儀》의 왕세자 冠禮時 初出服으로서의 時服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야기된 것으로 왕세자 時服에 대한 혼란이 후기까지 지속된 것으로 보이고 비록 순조대에는 冠禮時 初出服이라는 성격으로부터 時服을 일종의 편복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이전 광해군, 현종, 정조대의 時服논의나 숙종대 服制후 時服착용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후반기에는 왕과 마찬가지로 時服을 해석함에 있어 익선관, 곤룡포의 常服과 동일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조선시대 時服 중 왕과 왕세자만의 것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으로 계속해서 백관의 時服 연구가 이어질 때 時服의 전체적인 맥락이 파악될 것으로 보이며 백관의 時服과는 달리 유물이나 회화자료에서 왕과 왕세자의 時服을 찾을 수 없는 관계로 문헌 연구 중심으로 이루어져 그 색상이나 형태를 정확히 알 수 없었다는 한계를 지닌다. 다만 왕과 왕세자의 時服이 후반기에 비록 익선관, 곤룡포의 常服과 동일시되었지만 백관의 時服이 公服, 常服과 같은 단령을 착용하되 흉배를 가식하지 않고 그 색상에서 차이를 두었다는 점으로부터 왕과 왕세자 時服의 형태도 전반기에는 常服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이러한 점은 이후의 연구에서 계속 보완될 것이다.

## 참고문헌

- 《國朝五禮儀》
- 《國朝續五禮儀補》
- 《朝鮮王朝實錄》
- 강순제, “冠禮服小考”, 성심여자대학 생활과학연구논집 제4권 제1호, 1984
- 유희경, 김문자 『한국복식문화사』 교문사, 1998
- 周錫保, 『中國古代服飾史』 中國戲劇出版社, 1984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 사전』 1988
- 韓祐勳의 5인, 『譯註 經國大典』 註釋篇,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